

# 「발달재활서비스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지침

제정 2023.02.0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5호 [별표2]에 따라 자격이수를 위한 재활상담학과에 개설된 놀이심리재활영역의 임상실습(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정의)**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놀이심리재활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제반의 놀이치료활동을 말하며, 「관찰실습」과 「1대1 개별임상실습」으로 구분한다.

**제3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생의 요건)**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생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발달재활서비스의 놀이심리재활 영역 자격이수에 필요한 공통 교육과정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지원, 상담심리학, 발달심리’ 등의 3개 과목을 이수한 자
2. 「관찰실습」의 대상자는 1호의 3개 과목을 이수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놀이심리재활 영역 자격이수에 필요한 전공 교육과정인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정신건강, 놀이치료, 응용행동분석, 발달놀이치료, 아동심리치료’ 등의 7개 과목을 이수한 자
3. 「1대1 개별임상실습」의 대상자는 「관찰실습」을 마치고, 놀이심리재활 영역 자격이수에 필요한 전공 교육과정인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연구방법론’ 등의 2개 과목을 이수하고,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과 특수아동치료’ 등의 2개 과목을 수강 신청한 자

**제4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담당자 및 실습지도 교수)**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담당자 및 실습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관찰실습」의 실습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놀이심리재활 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나.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1대1 개별임상실습」의 실습담당자는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실습지도 교수는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시기간)**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시기간은 해당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찰실습」의 경우 전공과목인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개설 학기인 4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도의 동계방학부터 해당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한다.
2. 「1대1 개별임상실습」의 경우 전공과목인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개설 학기인 4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의 하계방학부터 해당 학년도 2학기 말까지 실시한다.

**제6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시간)**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시간은 「관찰실습」 최소 40시간과 「1대1 개별임상실습」 최소 40시간을 포함하여 총 14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관찰실습」의 경우 전공과목인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에서 이루어진 관찰과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교내 및 교외의 실습장소에서 진행되며, 최소 40시간 이상 진행한다. 「관찰실습」시간 40시간 중, 최대 39시간까지는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교과목의 수강시간으로 인정가능하며, 최소 1시간 이상은 교외의 실습장소에서 진행되는 「관찰실습」으로 진행한다.
2. 「1대1 개별임상실습」의 경우 전공과목인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진 슈퍼비전과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교내 및 교외의 실습장소에서 진행되며, 최소 40시간 이상 진행한다.
3.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시간은 총 140시간 이상 중, 장애아동에 대한 「관찰실습」 40시간 이상, 「1대1 개별임상실습」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4. 장애아동 대상 실습시간은 140시간 중, 최소 8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1대1 개별임상실습」 40시간 안에는 10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가 최소 2사례 이상을 포함한다.
5.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 시간 총 140시간 중, 「관찰실습」 40시간 이상, 「1대1 개별임상실습」 40시간 이상 외의 나머지 60시간은 놀이심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체계 및 방식, 대상자 부모 교육 및 상담 방법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습할 수 있다.

**제7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장소)**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실습장소는 교내 또는 교외에서 진행한다.

1. 교내의 실습장소는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실(영서관 304호 놀이행동치료실, 영서관 305호 심리상담실습실, 영서관 403호 행동평가실)로 한다.
2. 교외의 실습장소는 다음 각 목의 실습담당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관  
가. 놀이심리재활 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지도 경력이 있는 자

**제8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내용)**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내용은 「관찰실습」과 「1대1 개별임상실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관찰실습」은 놀이치료실 현장과 전반적인 놀이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실습이다. 「관찰실습」은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교육과정으로서, 놀이치료사의 역할과 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 「1대1 개별임상실습」은 직접 대상 아동에 대한 평가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별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으로, 놀이치료 계획의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제9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평가 및 성적)**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평가는 실습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실습지도 교수가 N/P(Non-pass 또는 Pass)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10조(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문서관리)**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문서는 「상지대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임상실습의 문서는 재활상담학과에서 보관·보존한다.

**제11조(기타)** 놀이심리재활 임상실습의 운영과 관련한 서식은 재활상담학과에서 작성한 양식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교과목 자격인정 안내서」에서 제시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